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법 학 전 문 대 학 원 설 치 · 운 영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부총리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후 예정

3) 규제심사 추후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146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‘2021학년도’를 ‘2023학년도’로 ‘2022학년도’를 ‘2024학년도’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146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	대통령령 제3146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<u>2021학년도</u> 입학전형부터 <u>2022학년도</u>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3학년도</u> ----- ---- <u>2024학년도</u>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255